## KOSHA GUIDE

C - 78 - 2016

## 5-3-2 철근 조립

- (1) 철근조립시 철근 이음위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철근의 도괴방지를 위하여 강관파이프, 와이어로프, 각재, 조립철근 등으로 버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옹벽 전면의 철근피복두께는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, 문양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양홈 깊이를 제외한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- (3) 작업발판 상부에 문양거푸집 및 자재 보관시에는 하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별도 고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4) 2미터 이상 고소작업시에는 비계를 조립 설치하거나 별도 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5) 장철근 설치시 철근지지대를 사용하여 먼저 설치한 철근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(6) 옹벽 뒷면부에서의 철근조립 작업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, 굴착사면 안전성 확보하여 확인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7) 옹벽 상부에서의 철근조립 작업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위한 비계를 설치하고 작업발판 단부는 떨어짐 방지용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 5.4 거푸집 설치 및 해체작업

## 5-4-1 거푸집 설치

- (1) 거푸집 설치할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수평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구조 검토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도에 의거하여 거푸집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거푸집의 운반 및 설치 작업에 필요한 작업장내의 통로가 충분한가를 확인 하여야 한다.